

【붙임 5】

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도급 계약서

201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기관인 서대문구청장을 “도급인”이라 칭하고 계약 상대자를 “수급인”이라 칭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계약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“도급인”과 “수급인”이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 하도록 도급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.

제2조 (업무내용) “수급인”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.

- 담당 조사구 경계확인, 거처 변동사항 수정
- 조사구역도 및 가구명부 보완 등 준비조사 관련 업무
- 조사안내문 배부 및 인터넷조사 안내
- 담당 조사구내의 가구방문 및 조사표 작성
- 완료된 조사표 내용검토 및 정리.제출 등

제3조 (계약기간)

① “수급인”의 계약기간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기간 중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.

- 교육 : 2일 (2015. 9. 21. ~ 10. 8. 기간 중)
- 준비조사 : 2일 (2015. 10. 22. ~ 10. 23.)
- 본조사(가구방문조사) : 12일 (2015. 11. 1. ~ 11. 15.기간 중)
(단, 본조사 기간은 15일이나, 조사업무량 감안 12일 계약)

② “수급인”은 도급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.

- ③ “도급인”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업무진도 파악, 전달사항, 조사표 검토 등을 위해 특정 날짜를 3~4회 정하여 지정된 장소에 “수급인”을 소집할 수 있으며, “수급인”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
제4조(보험 가입) “수급인”은 “도급인”과 도급 계약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**개인별 상해보험을 자기부담으로 의무적으로 가입**하여야 한다. (단, 이미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하나, 미가입자는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계약이 이루어짐)

제5조 (도급금액)

- ① “도급인”과 “수급인”은 계약 기간 내에 부여된 업무량을 완수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한 도급계약으로, 도급 금액 이외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○ 단, 이동거리를 감안하여 도급금액 이외에 추가로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“수급인”의 도급금액은 제2조의 “도급인”이 지정한 조사업무를 기간 내에 완료하였을 경우 세금공제 전 **779,360원**을 지급한다.

○ 교육참석 : 2일(97,420원)

○ 준비조사 수행 : 2일(97,420원)

○ 본조사(가구 방문조사) 수행 : 12일(584,520원)을 합한 금액이다.

- ③ “수급인”은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조사표 및 각종 관련서류를 “도급인”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“도급인”은 그 조사내용을 확인한 뒤 양호하다고 인정된 조사표 작성 실적에 따라 해당분의 도급금액을 “수급인”에게 지급한다.

- ④ 지급방법은 조사가 완료된 후 “도급인”은 “수급인”이 조사한 조사표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분의 도급금액을 14일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부실,허위조사에 대한 감액지급) “수급인”이 고의 또는 허위로 조사표

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대하여는 도급금액 중 20% 범위 내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. (조사표 내용검토 기간 중 확인)

제7조(중도포기자의 도급금액) “수급인”이 채용기간 중 조사업무를 중도 포기한 경우 도급금액을 다음 기준의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.

- ① 교육 종료 후 또는 준비조사 수행 중 조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.
- ② 준비조사 완료 후 중도 포기한 경우는 교육 및 준비조사 도급금액의 70%만 지급한다.
- ③ 본조사 기간에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조사 완료된 실적에 따라 교육 및 준비조사 도급금액의 70%와 조사 완료된 조사표에 해당하는 본조사 도급금액의 70%를 지급한다.
- ④ 중도 포기 발생으로 인하여 인수를 받아 조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총 도급금액 중 중도포기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도급금액을 지급한다.

제8조(업무량 배정 원칙) “수급인”은 “도급인”으로부터 업무량을 배정받아 조사기간 중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

구 분	동		읍.면		시 설
	아파트	보 통	아파트	보 통	
조사구(개)	4 ~ 8	3 ~ 5	3 ~ 5	3 ~ 5	10개 조사구 또는 시설인원 600명당 1명

제9조(의무 및 변상책임)

- ① “수급인”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위반 시 통계법 제39조(벌칙)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.
- ② “수급인”은 채용기간 중 담당업무 범위 내에서 “도급인”의 정당한 지

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, 고의 또는 과실로 “도급인”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체보상금) “수급인”은 계약기간 내에 조사표를 완성하여야 하며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 “도급인”은 “수급인”에게 지체 보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다.

제11조(계약해지) “수급인”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손상 및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“도급인”은 “수급인”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12조(용어해석) 이 계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“도급인”과 “수급인” 사이에 서로 상이한 경우 “도급인”의 해석에 따른다.

2015. . .

(도급인) 계약권자 : 서대문구청장

문 석 진 ㉠

(수급인) 계약 상대자 (조사원)

성 명 : 서명 (인)

주민등록번호 :

주 소 :